

1. 개정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과 필요역량을 반영한 면접시험 도입을 위해 인·적성검사를 종합적성검사로 변경하고, 개별면접과 집단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던 면접시험을 개별면접으로 변경하는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보유한 인재 선발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험위원 수 조정[안 제1항라목1)]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시험단계마다 위촉하는 시험위원 수(3→2명)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나. 집단·개별시험에서 개별시험으로 통합[안 제4항나호1)부터 3)]

- 집단면접과 개별면접으로 시행하던 것을 개별면접으로 통합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심층면접이 가능하도록 면접시간을 확대함

다. 면접위원 대상 교육방법 및 평정서식 마련[안 제4항다호, 라호]

- 공정한 면접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면접시험 평정요소별 배점 변경에 따른 평정서식을 개정함

라. 응시자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제출서류 정비[안 제5항]

- 채용후보자 등록 단계에서 제출하는 신원조사서의 중복제출 개선을 통한 응시자 편의성 제공을 위해 신원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

마.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 변경[안 제6항마호]

- 채용시험 합격자 결정을 위한 시험단계별 성적 반영비율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입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입교육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이하 “채용예규“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을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으로 한다.

제1호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시>	
① 현재 결원인원이 3명이고	② 시험공고(요구)일부터 1년간의 예상결원인원이 4명일
경우, 선발예정인원은 7명이 됨 (①의 3명 + ②의 4명 = 7명)	

제1호나목1) 중 “임용령”을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시>

◇ 최종시험일이 '21. 7. 15.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 최저연령(18세 이상) : '21.12.31.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03.12.31. 이전 출생자
- 최고연령(40세 이하) : '81. 1. 1. 이후 출생자

제1호다목1)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를 4)로 하며, 같은 목에 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중전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은 최초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3) 경력경쟁채용의 근무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경력요건이 완성되어야 함

4) “응시하고자 함”은 채용시험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채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 중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이 박탈됨

제1호라목1) 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면접시험”을 “면접시험·서류전형”으로, “외부전문가(교수, 타 기관 소속 공무원 등)”를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며, 같은 목 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 2”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의2”로 하며, 같은 목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험위원 서약서에는 회피 절차를 포함할 것

<예 시> • 시험단계별 적용 비율: 필기(50%) + 체력(25%) + 면접(25%) $[(\frac{\text{필기시험점수}}{\text{필기시험과목수}} \times 0.5) + (100 \times \frac{\text{체력시험점수}}{60} \times 0.25) + (100 \times \frac{\text{면접시험점수}}{50} \times 0.25)] + (\text{자격가점})$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가점은 각각 시험단계별 적용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은 100점 환산점수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셋째자리에서 절사) • 최종합격자 결정은 일괄적으로 100점 환산점수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셋째자리에서 절사)
--

제1호바목1) 중 “5~10%”를 “2~5%”로 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응시자에게 채용공고를 통해 별표 1의 도핑테스트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받아야 함

3)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은 관계 전문가(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며, 응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도핑테스트는 시험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임용령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함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물복용이 적발된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임용령 제4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제1호사목 중 “<별지 서식 1>에”를 “별지 제1호서식에”로 하고, 같은 호 아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자목4) 중 “개인정보보호법 제1

5조에 따라”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로, “함([참고자료5] 참조)”을 “함”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2)가)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로 하며, 같은 2) 라) 중 “교육훈련규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2) 중 “요구하여야함”을 “요구해야 함”으로 한다.

- 1)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인·적성검사”를 각각 “종합적성검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인·적성검사결과는”을 “종합적성검사 결과는”으로, “2단계 개별면접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의”를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3호가목 중 “채용규칙”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로, “실시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제4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은 근무경력·응시자격과 밀접한”을 “관련분야 능력 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근무경력·응시자격과”로, “전문가를 포함”을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구성하여 전문지식·기술의 평가를 시행”으로 하며,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면접위원의 제척·기피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위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5) 면접 시행 전 면접위원에게 선발예정직위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고 평가(구조화된 면접)를 시행해야 함

제4호나목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를 삭제한다.

1)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종합적성검사 결과 등의 자료와 사전에 설정한 면접문제의 질문과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하여 검증해야 함

2) 면접시험은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능력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20분 이상 30분 이하로 진행함

3)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결정방법, 면접진행 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시행해야 함

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 2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함

라. 면접시험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평정해야 함
제6호가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역에 의한 계산 방법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定)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월(月), 연(年) 단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복수의 간헐적 경력기간의 합산 ① 연(年) 단위는 경력 계산에서 역(曆)에 의한 계산이 곤란할 경우 각각의 경력을 일(日)단위로 환산할 다음 1년(365日)로 나누어서 경력을 계산 ② 월 단위의 경력 계산의 경우 연단위의 계산을 공제한 뒤 남은 일수를 1개월(30日)로 계산

제6호가목2)를 3)으로 하고, 같은 3)(종전의 2)) 가)부터 다)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

나)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평가심의회”라 한다)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하며, 외부 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선정해야 함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써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호가목3)(종전의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제6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징계처분의 판단시점은 징계를 받은 당시의 재직기관 성격에 따라 판단함

※ 응시자 김○○이 A기관에 재직하던 중 2022년에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이후 A기관을 지정·고시에서 제외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의 결격사유로 판단해야 함

제6호다목1) 중 “<별지 서식 2>와”를 “별지 제2호서식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 중 “<별지 서식 3>”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참고자료5]”를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목 5)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세부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는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

검증자료	사실 확인		
응시자격요건 해당 사항 및 응시자가 기재한 전체 경력	⇒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 조회 요청→ 해당 기관 명의의 확인서를 받음 +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관련기관에 보험 가입 이력 등을 조회 + 응시자로부터 근무기간·소득금액 증명을 받아 교차 확인	

<경력 확인>

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 확인 및 교차 검증 실시

②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내역

③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한 근무기관 및 기간 대조

※상기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회사도 있으므로, 시험실시기관에서 상기 자료 외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교차 검증 실시 가능

제6호다목6) 중 “<별지 서식 4>”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중 “다만,”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호 마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실시(법 제6조”를 “실시[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로, “제39조)”를 “제39조]”로 하고, 같은 목 1) 중 “산정방법(체력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을 “산정방법”으로 하며, 같은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류	체력	면접	필기	실기
○	×	○ (100%)	×	×
○	×	○ (75%)	○ (25%)	×
○	○ (25%)	○ (75%)	×	×
○	×	○ (25%)	×	○ (75%)
○	○ (25%)	○ (25%)	○ (50%)	×
○	○ (25%)	○ (25%)	×	○ (50%)
○	○ (15%)	○ (25%)	○ (30%)	○ (30%)

제2호가목2) 중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로 한다.

제6호마목2) 및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시험실시권자는 업무 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1)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함
- 3) 임용권자(시험실시권자)는 임용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전문기

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할 때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야 함(대학교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각각 제출)

Ⅲ. 신입교육(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제6호다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소요경비의 산정 시 특정직무의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실무수습·교육의 소요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음

Ⅳ. 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소 방 공 무 원 면 접 시 험 실 시 기 준

1. 평정요소 등

가.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평정요소 (5개 분야 50점)	S	A	B	C	D
발표면접	①문제해결능력(10점)	10	8	6	4	2
	②의사소통능력(10점)	10	8	6	4	2
인성면접	③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10점)	10	8	6	4	2
	④팀워크 및 협업능력(10점)	10	8	6	4	2
	⑤침착성 및 책임감(10점)	10	8	6	4	2

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면접시험위원 구성

가. 면접시험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2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면접시험위원은 채용예정계급 보다 상위계급인 소방공무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해야 한다.

다. 면접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위원은 제척이나 회피를 통해 해당 응시자의 시험 절차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라. 면접시험위원은 보안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마.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시험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불합격 결정방법, 면접 시험 진행 절차 등 면접시험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응시 번호				【 사 진 】	평정요소	위원평정				
	본인 필적 기재	(예시) 본인임을 확인함	분 야			10점	8점	6점	4점	2점
	필 적: 본인임을 확인함	성 명			가. 문제해결능력	⑩	⑧	⑥	④	②
					나. 의사소통능력	⑩	⑧	⑥	④	②
					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⑩	⑧	⑥	④	②
					라. 팀워크 및 협업능력	⑩	⑧	⑥	④	②
					마. 침착성 및 책임감	⑩	⑧	⑥	④	②

면 접 실		위원 번호	면접 일자
①	①	①	20 . . .
①	①		
②	②		
③	③		
④	④		
⑤	⑤	②	위원 서명
⑥	⑥		
⑦	⑦		
⑧	⑧		
⑨	⑨		
		③	성 명 (서명)
		④	
		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이하 "채용예규"라 한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교육훈련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채용시험 및 신입교육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 ----- ----- ----- ----- ----- ----- ----- 1. ----- 가. ----- 1) ----- ----- ----- ----- ----- -
1. 채용시험 일반 가. 선발예정인원의 산정 1) 선발예정인원은 결원발 생인원과 시험공고(요구) 일부터 1년간의 예상결 원을 합산하여 산정함	

< 예 시 >

① 현재 결원인원이 3명이고 ② 시험공고(요구)일부터 6개월 전부터 선발예정인원은 7명이 됨 (∴ ①의 3명 + ②의 4명 = 7명)

2) · 3) (생략)

나. 응시연령의 계산방법

1)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임용령 제43조에서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되어야 함

2) 다만, 응시상한연령을 설정할 경우 응시상한연령은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음

< 예 시 >

◇ 최종시험일이 '18. 2. 15.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경우
▪ 최저연령(21세 이상) : '18.12.31. 기준으로 만 21세 이상
▪ 최고연령(40세 이하) : '77. 1. 1. 이후 출생자

다. 응시요건 등의 기준

1) 임용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운전면허의 보유 기준일은 최초시험 예정일이며, 운전면허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건 또

< 예 시 >

① 현재 결원인원이 3명이고 ② 시험공고(요구)일부터 6개월 전부터 선발예정인원은 7명이 됨 (①의 3명 + ②의 4명 = 7명)

2) · 3) (현행과 같음)

나. -----

1) -----

「소방공무원임용령」

(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

2) -----

< 예 시 >

◇ 최종시험일이 '21. 7. 15.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 최저연령(18세 이상) : '21.12.31.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최고연령(40세 이하) : '81. 1. 1. 이후 출생자

다. -----

1) -----

<후단 삭제>

한 최초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야
함(다만, 근무경력은 최
종면접시험일(예정일)까
지로 함)

<신 설>

<신 설>

2) “응시하고자 함”은 채용
시험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
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채
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
미하며, 기간 중 응시요
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
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
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
격이 박탈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요건이 박탈됨을 알
았을 경우 임용령 제46조

2) 경력경쟁채용의 응시요
건은 최초시험 예정일까
지 자격요건이 완성되어
야 함

3) 경력경쟁채용의 근무경
력은 최종시험 예정일까
지 경력요건이 완성되어
야 함

4) “응시하고자 함”은 채용
시험 원서접수일 당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
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채
용단계의 모든 기간을 의
미하며, 기간 중 응시요
건으로서의 운전면허, 자
격보유의 효력이 정지되
거나 소멸하면 응시자격
이 박탈됨

제5항에 따라 합격자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합격자를 결정

라. 시험위원의 위촉(임용령 제50조)

1)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되, 3인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타 기관 소속 공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함

3)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가) 시험위원 서약서([참고자료 1]에 회피절

라. -----

1) -----

----- 2인 -----

2) -----

----- 면

접시험·서류전형 -----

----- 다른 행정기

관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

인-----

3) -----

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

른 시험위원 서약서에

차 포함 할 것)

나) (생 략)

4) (생 략)

마. 점수의 계산

1) (생 략)

2) 다만,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체력시험의 종목별 측정값에 있어 악력·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하며, 배근력·제자리멀리뛰기의 측정값 중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3)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득점의 계산은 시험별 점수를 일괄적으로 계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함(셋째자리에서 절사)

는 회피 절차를 포함 할 것

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마. -----

1) (현행과 같음)

2)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3조의2 -----

3) -----

< 예 시 >				
필기시험				체력
국어	소방학개론	영어	총점	
90	80	80	250	

※ 평가비중 :

$$\frac{(90+80+80)}{3} \times 0.75 + \frac{85}{60} \times 100 \times 0.15 + \frac{1}{\text{단계}} (10+5.5+)$$

필기시험 체력시험

바. 도핑테스트의 실시(임용령 제51조제1항제6호)

1) 도핑테스트는 체력시험 응시자의 5~10% 범위에서 대상을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함

2) 채용공고를 통해 응시자에게 도핑테스트 실시에 대해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참고자료 2] 참조), 체력시험 응시자에 대해 도핑테스트 시행 동의서를 받아야 함([참고자료 3] 참조)

3)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의 복용의 인정은 관계 전문가(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예 시 >	
시험단계별 적용 비율: 필기(50%) + 체력(25%)	
$[(\frac{\text{필기시험 점수}}{\text{필기시험 과목수}} \times 0.5) + (100 \times \frac{\text{체력시험 점수}}{60} \times 0.25) + (100 \times \frac{\text{체력시험 과목수}}{60} \times 0.25)]$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가점은 각각 시험단계별 적용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은 100점 환산점수로 소수점(셋째자리에서 절사) - 최종합격자 결정은 일괄적으로 100점 환산점수로 소수점(셋째자리에서 절사)	

바. -----

1) -----

----- 2~5% -----

2) 응시자에게 채용공고를 통해 별표 1의 도핑테스트 안내문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받아야 함

3) 치료목적으로 인한 금지약물 복용의 인정은 관계 전문가(의사)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해야 하며, 응시자는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
청서는 [참고자료 4] 참
조

4) 도핑테스트는 시험의 단
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임
용령 제37조제3항을 적
용받지 아니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
물복용이 적발된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결정
을 취소하고, 임용령 제4
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
라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신 설>

별지 제10호서식의 치료
목적사용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도핑테스트는 시험의 단
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
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
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임
용령 제37조제3항을 적
용받지 아니함

5)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도핑테스트 결과 금지약
물복용이 적발된 경우 해
당 응시자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임용령 제4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사. 합격증명서 발급(임용령 제53조) 시험실시권자는 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서식 1>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함 아. 추가합격자의 결정(임용령 제46조제5항 및 제6항) 1)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	<u>있음</u> 사. ----- ----- ----- ----- <u>별지 제 1호서식에</u> ----- ----- 아. ----- ----- --- 1) 시험실시권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계속 발생한 경우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자.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자.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채용관련 서류의 보관 시 개인정보보유를 위해 <u>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u> <u>에 따라</u>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u>함([참고자료5] 참조)</u>	4) ----- ----- --- 「 <u>개인정보보호법</u> 」 <u>제15조에 따라 별지 제1</u> <u>호서식의</u> ----- --- 함
차. 채용후보자 명부에 관한 사항	차.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는 아래와 같음	2) ----- -----
가) <u>국가공무원법 제33</u> <u>조</u> 각호의 사유가 발 생	가) 「 <u>국가공무원법</u> 」 제 <u>33조</u> -----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u>교육훈련규정 제17</u> <u>조제1항에 따른</u> 추가 교육 시 <u>제15조의 수</u> <u>료 기준에</u> 재차 미달 한 경우(단 질병, 병역 복무 등으로 인한 추 가교육은 제외한다)	라) 「 <u>소방공무원 교육훈</u> <u>련규정</u> 」(이하 “ <u>교육</u> <u>훈련규정</u> ”이라 한다) ----- ----- ----- ----- -----

마) (생 략)

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령 제51조)

1) (생 략)

2)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한해 징계의결 및 징계를 요구하여야함

2. 인·적성검사

가. 인·적성검사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집합검사(수기검사 또는 집합 후 전산검사)로 실시하여야 함

나. 인·적성검사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사전 제공되어야 하며, 2단계 개별면접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의 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3. 신체검사

가. 시험실시권자는 채용규칙에서 정하는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에

마) (현행과 같음)

카. -----

1) (현행과 같음)

2) -----

----- 요구해야 함

2. 종합적성검사

가. 종합적성검사-----

나. 종합적성검사 결과는 --

----- 면접시험 ----

3. -----

가. ----- 「소방공

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

규」-----

따라 신체검사를 <u>실시하여</u> <u>야 함</u> 나. ~ 라. (생 략) 4. 면접시험 가. 면접시험 개요 1) (생 략) 2) <u>면접은 원칙적으로 2개</u> <u>조를 구성하여 진행하여</u> <u>야 함. 면접위원 위촉 등</u> <u>의 문제로 2개조의 구성</u> <u>이 곤란 한 경우 예비위</u> <u>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함</u> 3) (생 략) 4) <u>경력경쟁채용의 면접 시</u> <u>외부전문가 1인 이상은</u> <u>근무경력 · 응시자격과</u> <u>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u> <u>가를 포함해야 함</u> 5) <u>면접 실시 전 면접위원</u> <u>에게 평정요소별 예시 질</u> <u>문지를 제공하여 하며,</u> <u>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관</u> <u>련분야의 전문지식 · 기</u> <u>술의 평가를 반드시 실시</u>	----- <u>시행</u> <u>해야</u> --- 나. ~ 라. (현행과 같음) 4. ----- 가. ----- 1) (현행과 같음) 2) <u>면접위원의 제척 · 기피</u> <u>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u> <u>비하여 예비위원 1명 이</u> <u>상을 두어야 함</u> 3) (현행과 같음) 4) ----- - <u>관련분야 능력 등의 검</u> <u>증이 필요한 경우 근무경</u> <u>력 · 응시자격과</u> --- <u>외</u> <u>부전문가 1명 이상을 구</u> <u>성하여 전문지식 · 기술</u> <u>의 평가를 시행</u>--- 5) <u>면접 시행 전 면접위원</u> <u>에게 선발예정직위 및 업</u> <u>무특성에 적합한 면접문</u> <u>제를 개발해 사전에 설정</u> <u>한 질문과 기준을 정하여</u> <u>제공하고 평가(구조화된</u>
---	--

하여야 함

나. 면접시험의 진행방법

1) 면접시험의 진행방식

면접시험 방식에 따라 유사한 주제에 관해 반복 질문함으로써 응시자의 거짓답변을 가려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며, 심층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진실한 답변을 유도하고 검증해야함

2) 1단계(집단면접)

가) 10명 내외의 인원을 1개조로 구성하되 1명당 2분의 시간을 부여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접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위협상황 대처역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토의주제와 평가기준을 구성

다) 소방관련 전문지식의 평가는 공개경쟁채용

면접)를 시행해야 함

나. -----

1)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종합적성검사 결과 등의 자료와 사전에 설정한 면접 문제의 질문과 기준에 따라 구조화된 면접을 시행

하여 검증해야 함

2) 면접시험은 발표면접과

인성면접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능력과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20분 이상 30분 이하로 진행함

시험의 경우 소방학개론 범위내의 질문으로 구성하며,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채용응시요건 관련된 전문성을 평가함

3) 2단계(개별면접)

가) 개별면접은 5~10분 동안 진행함

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심층질문을 진행

다) 역사의식·헌법정신 및 공직윤리 등의 질문을 통해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을 평가

라) 면접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자유롭게 취사선택하여 질문 할 수 있는 공직가치에 관한 추가 질문 예를 제시

<신 설>

3) 시험실시권자는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 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 등을 시행해야 함

다. 면접시험의 평가요소별 배점기준, 면접위원의 구성, 평가방법 등은 별표 2

<신 설>

5. 신원조사

범죄경력 등의 신원조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임용결격사유의 판단자료로만 활용 할 수 있으며, 면접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6.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관리

가. 경력기간의 계산

- 1)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 · 월 · 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

1) 역에 의한 계산 방법(「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의 기간을 日로
기간이 만료함
-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2) 월(月), 연(年) 단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복
- 연(年) 단위는 경력 계산에서 역(曆)에 의한 계산이
단위로 환산한 다음 1년(365日)으로 나누어서 경력을
- 월 단위의 경력 계산의 경우 연단위의 계산을 공제함

<신 설>

의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함

라. 면접시험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평정해야 함

<삭 제>

6. -----

가. -----

- 1) -----

* 역에 의한 계산 방법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定)한 경우에 최종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월(月), 연(年) 단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① 연(年) 단위는 경력 계산에서 역(曆)에 의한 계
일(日)단위로 환산할 다음 1년(365日)로 나누
② 월 단위의 경력 계산의 경우 연단위의 계산을
1개월(30日)로 계산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
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
시험예정일(시험요구기
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
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
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
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
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
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 할 수 있다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
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
간 상근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
의 경우에는 근무시

응시자격 요건으로써 필
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
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력을 계산할 때는 임용
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
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아래의 사항에 따라
포함할 수 있다.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
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예. 계약직으로 3
년간 상근근무: 3년
인정)

나)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
의 경우에는 근무시

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4년
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
해 직무분야의 외부전
문가 2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
로 구성된 심의회(“경
력경쟁채용 근무경력
평가심의회”라 한다)
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외부 전문가는 응시
자와 출신학교, 근무
경험 등의 관계가 없
는 자를 선정

나. 종전의 재직기관의 해석
범위(임용령 제15조제1항)

1) · 2) (생략)

3) 징계처분의 판단시점은

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계약직으
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
정(주당 근무시간이 4
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
해 직무분야의 외부전
문가 2분의 1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
로 구성된 심의회(“경
력경쟁채용 근무경력
평가심의회”라 한다)
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하며, 외부 전문
가는 응시자와 출신학
교, 근무경험 등의 관
계가 없는 자를 선정
해야 함

나. -----

1) · 2)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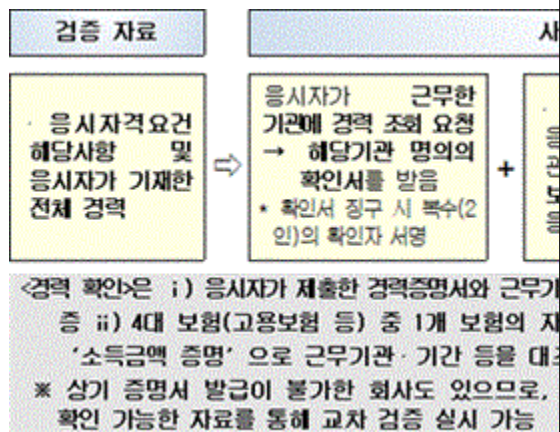
3) 징계처분의 판단시점은

<u>징계를 받은 당시의 재직 기관 성격에 따라 판단함</u> ※ 응시자 김○○이 A기관에 재직하던 중 2011년에 갑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2년 이후 A기관을 지정·고시에서 제외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의 결격사유로 판단해야함 다.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확인(시행규칙 제28조제3항) 1) 응시자가 근무한 기관에 경력조회 요청을 위한 서식은 <별지 서식 2>와 같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세부 확인을 위해 공고에는 다음 서류 제출을 반드시 요구하여야 함 ※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3) 응시자격 확인 서류의 제출 방법은 <별지 서식	<u>징계를 받은 당시의 재직 기관 성격에 따라 판단함</u> ※ 응시자 김○○이 A기관에 재직하던 중 2011년 갑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2년 이후 A기관을 지정·고시에서 제외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의 결격사유로 판단해야 함 다. ----- ----- ----- 1) ----- ----- ----- 별지 제2호서식과 ----- 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의 세부 확인을 위해 공고문에는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 3) ----- ----- 별지 제3
--	---

3>에 따름

4) 응시자격 요건 검증을 위해 [참고자료5]의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함

5) 경력경쟁채용시험 제출 서류 확인 요령



6)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 <별지 서식 4>의 근무경력사실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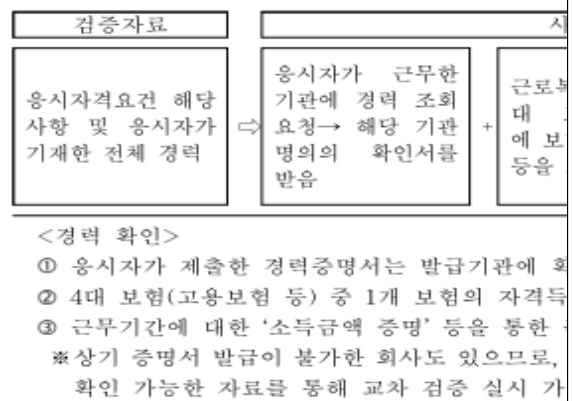
라.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 1) (생략)
- 2) 다만,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

호서식-----

4) -----
 ----- 별지 제11호서식-----

5) -----



6) -----

 ----- 별지 제4호서식-----

라. -----

- 1) (현행과 같음)
-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
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마.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실
시(법 제6조, 임용령 제15
조 및 제39조)

1) 소방정 이하 경력경쟁채
용의 성적 산정방법(체력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
우)

임용령	서류	체력	면접
제39조제1항 제2호	○	×	○ (25%)
	○	×	○ (25%)
	○	×	○ (25%)

2) 필기시험의 미실시 기준
(임용령 제39조제1항제2
호)

필기시험 실시를 원칙으
로 하되, 필기시험을 실
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
력경쟁채용은 아래 분야
로 한정

-----.

마. ----- 실
시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
----- 제39조]

1) -----
----- 산정방법

서류	체력	면접
○	×	○ (100%)
○	×	○ (75%)
○	○ (25%)	○ (75%)
○	×	○ (25%)
○	○ (25%)	○ (25%)
○	○ (25%)	○ (25%)
○	○ (15%)	○ (25%)

2) 시험실시권자는 업무 내
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
여 1)의 구분에 따른 시
험방법을 선택하여 경력
경쟁채용을 실시하여야
함

법	구
제6조제2항제2호	소방분야(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구급분야(의사) 화학, 기계, 건축,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능장 소방정·항공분야(1~4급 항해사, 기관 종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
제6조제2항제3호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소방정·소방벨기 조종 및 정비, 전자
제6조제2항제3호 (전문기술교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제6조제2항제7호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으로 임

3) 임용권자(시험실시권자)

는 임용령 제15조제5항
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
용을 실시 할 때 공고문
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
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 <별지 서식 5>
에 따라 동일계통학과 증
명서 제출을 요구해야함
※ 대학교와 대학원이 다
른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
명서를 각각 제출

Ⅲ. 신입교육(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2. 신입교육생의 지위

가. 신분

1) (생 략)

3) 임용권자(시험실시권자)

는 임용령 제15조제5항
에 따라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경쟁채
용을 실시할 때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
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
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동일계통학과 증명
서 제출을 요구해야 함
(대학교와 대학원이 다른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
서를 각각 제출)

Ⅲ. 신입교육(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2. -----

가.

1) (현행과 같음)

2) 직무상 행위(실무수습)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함(<u>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u>) 3) (생략) 나.·다. (생략) 6.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의 반납조치(<u>교육훈련규정 제11조</u>) 가.·나. (생략) 다. 소요경비의 산정 1) (생략) 2) <u>소요경비의 산정 시 특정직무의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실무수습·교육의 소요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음</u>	2) ----- ----- ----- (「<u>국가공무원법</u>」 제26조의4) 3) (현행과 같음) 나.·다. (현행과 같음) 6.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1) (현행과 같음) 2) <u>소요경비의 산정 시 특정직무의 적응을 위해 기본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 실무수습·교육의 소요비용을 포함 시킬 수 있음</u> IV. 재검토 기한 <u>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u>
---	--

	<u>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u> <u>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u> <u>하여야 한다.</u>
--	--